

##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145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8. 4. 1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윤복영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철용으로만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였으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감면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서초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면허세감면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범위의 확대
  -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다.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2.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구:내무부) 세제13,400-37('98.2.12) 호와 서울특별시 세정 13,400-207('98.3.9)호로 개정사항의 준칙안이 시달 됨에 따라 서초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사항 중 2항의 감면대상이 현행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만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면허세면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생업활동용 자동차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며,
- 3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 2호,3호,4호는 변경됨이 없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3. 관련법규

#### 〈지방세법 7조, 9조〉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78.12. 6개정)